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65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이종배·박덕흠·송석준

진종오 • 이종욱 • 강승규

주호영 · 성일종 · 이만희

김성원 · 이양수 · 김소희

송언석 • 박상웅 • 서일준

김용태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이후에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요내용마저 수정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력요금이나 전력산업 등에 미치는 영 향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 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함(안 제3조제2항).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생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②		
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전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	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다.	<u>영향 등</u>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